

제355회 국회 임시회(폐회중)
제 2 차 정 무 위 원 회

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

2018. 1. 18.



국무조정실

I. 가상통화 현황 및 문제점

1. 현황

- **[개념]** 가상통화*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, IMF, ECB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중앙은행·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창출한 “가치의 전자적 표시(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)”를 의미

* 디지털통화(digital currency)·암호통화(crypto currency)·가상통화(virtual currency) 등이 혼용

- ◆ **국제통화기금(IMF):** "digital representations of value, issued by private developers and denominated in their own unit of account"
- ◆ **유럽중앙은행(ECB) :** "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, not issued by a central bank, credit institution or e-money institution, which, in some circumstances,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to money"

- **[가상통화 종류]** '09.1월, 최초의 가상통화인 **비트코인*** 등장 이후 이더리움, 리플 등 다수의 가상통화가 개발되어 유통중

* 나카모토 사토시는 '08.11월 보고서(Bitcoin: A Peer-to-Peer Electronic Cash System)를 통해 금융기관 개입 없이 P2P 네트워크를 활용한 결제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

- 전세계적으로 약 **1,440여개**(출처: CoinMarketCap, '18.1.17), 국내에서는 **120여개**(국내 4대 거래소 기준, 18.1.17)가 거래되고 있음

- **[가상통화거래소]** 국내 운영중인 가상통화거래소는 **37개*** 이상

* 국내은행과 계좌서비스 계약을 맺은 거래소 및 블록체인협회 가입 거래소, 인터넷상 소규모 거래소 등 취합(금감원, '18.1.17일 기준)

- **[거래 현황]** 가상통화 국내 시세는 현재 비트코인 기준 약 **1,250만원**('18.1.17일, 22:00) 수준

- '18.1.17일 기준 국내 가상통화 일일 거래규모*는 **58억불** 수준으로 전세계 거래규모 296억불의 **19.7%** 내외

* 국내 4대 거래소(업비트·빗썸·코빗·코인원)의 3대 가상화폐(비트코인·이더리움·리플) 거래량 기준

2. 문제점

① 투기분위기에 편승한 다단계·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 발생

* 예) 다단계방식으로 코인 채굴에 따른 수익공유 사칭, 국내외 피해자 18,000여명, 피해액 2,700여억원 발생 (마이닝맥스 국제사기사건, '17.12월)

② 비정상적인 투기과열로 경제·사회 부작용 우려

* 예) ① 24시간 거래로 일상 생활에 지장 초래, ②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의 거래 참여, ③ 생산적 부문에서 자금이 이탈하여 투기로 흐른다는 우려 등

③ 가상통화 거래의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문제

* 예) ① 랜섬웨어 제거 대가로 가상통화 요구, ② 美 LA 한인 갱단, 국내 조직원 등이 비트코인으로 마약 거래(약 6천만원 규모)를 하다 적발('17.5월)

④ 거래소에 대한 해킹·개인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

* 예) ①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'아피존'은 전자지갑 해킹으로 약 5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탈취('17.4월), ② '빗썸'은 직원 PC가 해킹되어 약 3만여명의 고객정보 유출('17.6월)

II. 가상통화 대응 및 주요 대책

1. 대응 경과

① 금융위 주관 TF*를 구성('16.11~'17.4월)하여 가상통화 동향 및 주요국 규제현황 등을 검토

* 주재: 금융위 국장 / 구성: 기재부, 한국은행, 금감원, 학계, 법조계 전문가

② 금융위 주관 TF를 확대* 개편('17.7~11월)하여 거래투명성·소비자 보호 조치 및 관련범죄 단속 강화 등 대응방안 마련

* 주재: 금융위 부위원장 / 구성: 기재부, 공정위, 법무부, 과기부, 방통위, 경찰청, 한국은행, 금감원, 인터넷진흥원 등

③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부처 입장 등을 조율하고, 긴급대책 및 특별대책을 마련·발표('17.12.13, 12.28)

2. 그동안 정부 주요대책

- ◆ 가상통화 거래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병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선의의 거래자보호, 거래투명성 강화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

①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처 (검경)

- 다단계·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,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,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,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(검·경)
 -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, 가상통화 ‘이더리움’ 투자금 편취사건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,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(검·경)
 - ‘코인원’에 대한 도박개장 혐의 관련 기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, 시세조작 등 거래소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 검경, 금융당국 합동조사 실시
 - 「'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」을 수립·추진하되, 범죄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
- * '18년 주요 단속대상(案): ①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·유사수신, ②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, ③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, ④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, ⑤거래소의 불법행위 등
- 「외환거래법」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환전 혐의업체를 조사중(관세청)
- 가상통화 거래소 약관의 불공정여부에 대해 일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 약관 사용 판단시 행정조치 계획(공정위)

② 가상통화 거래 과열에 대한 대응 (금융위)

- 본인 확인 없이 가상통화 거래계정으로 방만히 활용된 가상계좌를 통한 신규 가입을 즉각 중단(12.28~)
-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* 실시
(1월말 「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」 가동)
 - * 이용자·가상통화 거래소 은행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경우에만 입·출금 허용
- 실명확인을 통해 외국인·청소년의 무분별한 신규 진입을 차단
- 투기과열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·매입·담보취득·지분투자 금지(12.13~)
- 은행권의 가상통화와 관련한 의심거래*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,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에 대한 합동점검(1.8~16일, 6개 은행 대상)
 -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,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「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」 마련·배포 예정('18.1월)
 - * 고객의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(현금거래), 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(분산거래) 등

③ 개인정보 유출·해킹 우려 등에 대한 대응 (과기정통부·방통위)

- 주요 거래소(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)에 '18년 ISMS인증* 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, 보안강화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인증이행 요청
- * ISMS(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):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·인증하는 제도 / 매출액 100억원 이상, 일일평균 방문자수 100만 이상이 대상기업 (정보통신망법 제47조)
- 거래소 보안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(~'17.12월)하였으며 「정보통신망법」 위반으로 나타날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('18.1월, 방통위)
 -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등도 추진 (방통위)
 - * 금년 상반기중 「정보통신망법」 개정 추진

④ **블록체인 등 기반기술 육성·지원 강화** (과기정통부)

-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하나인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은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와 별개임을 명확히 하고, 기술개발 지원 등 시행

- * 2018년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100억, 시범사업에 42억 투입 예정
- ** 블록체인 공공분야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·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과제 수요조사 중 (~'18.1월)

III. 향후 계획

- ◆ 정부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 등에 대해 거래자의 주의를 지속 환기

< 예: 1.15일 「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」 보도자료 >

-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,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·투기적 수요,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, 투자,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.

- ◆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, 투기과열 방지 등을 위해 既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

① 가상통화와 관련한 사기·시세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

② 비정상적인 투기 진정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 방안 지속 검토

- ◆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·육성은 지속 추진